

	<b>현장실무에 따른 학점 인정규칙</b>	규정번호	3-3-6
		제정일자	1996.03.01
		개정일자	2011.05.13
		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현장실무에 연계된 전공 교과목의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점인정 대상자)**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한한다.

**제3조(학점인정 범위)** 해당학과 전공과목으로 총 16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되 매학기 8학점 이내로 한한다.

**제4조(학점인정 절차)** ① 해당학생이 입학한 학부의 학부장 또는 학과의 학과장은 해당 학생의 직무를 파악하여 교과과정 개설교과목 중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을 설정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교학처에 학점인정서를 제출한다.

② 해당 학생은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한다.

③ 해당과목 담당교수는 현장 직무평가서, 시험, 보고서,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학기말에 성적단표에 반영 처리한다.

**제5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